



비관세장벽 현안 : EU, 카제인 및 카제이네이트 신규 지침 발표

2016년 12월 22일을 기준으로 유럽 연합 회원국들의 카제인 및 카제이네이트의 신규 지침과 관련된 규정들이 발효된다.

EU, 카제인 및 카제이네이트 신규 지침 발표

2016년 3월 5주차

[참고자료]

까탈루냐 식품 안전 사이트 :

<http://www.gencat.cat/salut/acsa/html/es/dir1644/doc36885.html>

신규 지침인 「Directive (EU) 2015/2203」는 「Directive 83/417/EEC」를 바탕으로 식용 카제인과 렌넷 카제인(Rennet Casein), 식용 카제이네이트에 적용되는 규정을 다루고 있다. 본 지침에서는 상기 식품첨가물에 대해 최대 수분함유량, 최대 유지방, 재(회분) 함유량 등의 기준치를 두고 있으며, 남은 최대 0.75mg/kg 이상이 검출될 경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이번 신규 지침은 기존 지침에서 중복되고 있던 사항들을 재정리했으며, 식품첨가물 3가지의 규정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에서 채택한 식용 카제인의 규격에 따라 새롭게 정리했다.

EU 회원국들에게는 신규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일정기간이 주어지는데, 이번 지침의 경우 2016년 12월 22일까지 준비를 마쳐야 한다. 신규 지침 적용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기존 지침인 「Directive 83/417/EEC」 역시 12월 22일 폐지될 예정이다.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카제인은 주로 유제품과 관련된 품목인데 한국 유제품 수출이 대다수가 아시아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럽연합의 지침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은 없다. 하지만 국내 낙농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국내산 유제품 수출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며,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유럽은 전통적인 낙농산업 강국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유제품 수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 고유의 유제품들이 아시아 지역에서도 품질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향후 유럽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식품첨가물인 카제인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므로 라벨 표기가 중요하다. 유럽의 경우 올해부터 새로운 지침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변경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여 라벨 오류로 인한 통관 거부 피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침 안내 (영문)

「Directive (EU) 2015/2203」 :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5L2203>

「Directive 83/417/EEC」 :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1983L0417>

- KATI(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상의 콘텐츠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 본 페이지에 등재된 모든 자료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외 여러 국가로 수출 중인
한국의 유제품]

